

자 료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방향

국민연금제도란 노후나 불의사고·질병으로 인한 장애와 사망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평생동안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급부를 행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기적 소득보장제도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지난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까지 마련하였으나 당시의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연평균16%씩 상승하는 높은 물가상승율로 인하여 실시시기를 연기하였었다.

그러나 최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민적 부담능력이 향상되었고 물가도 안정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를 위한 여건이 성숙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1986. 9. 1일 발표된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에서 국민연금제도를 1988. 1. 1일 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하였다.

세계적으로 볼 때 1985년 현재 1인당 GNP가 2천불 이상인 세계 40개 국가중 노후생계보장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연금제도의 도입은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겠다.

◇연금제도 실시의 필요성

가. 노령연구의 증가와 사회적 위험의 증대

우리나라는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평균수명이 급격히 연장되고 있고 성공적인 가족계획사업등으로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고 있어 인구의 노령화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60세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은 <표-1>에서 보는 바와같이 1987년 현재 전인구의 6.8%에서 2000년에는 10.0%, 2040년에는 25.0%로 급증할 전망이다.

한편 1983년 현재 우리나라 60세이상 노인의 노후실태를 보면 아무런 대비도 없이 자녀들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도시화와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젊은 계층의 노인 부양의식은 크게 약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공업화와 도시화의 가속화 과정에서 사망,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각종 소득상실의 위험이 가중되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약 20년 동안에 8.6배나 증

<표-2>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추이

<표-1> 노령인구의 증가추이

(단위:천명)

구 분	1970	1986	2000	2040
인 구 (A)	31,435	41,569	48,017	49,925
60세 이상인구 (B)	1,704	2,824	4,781	13,256
B / A	5.4	6.8	10.0	25.0
피 부 양 율 ¹⁾	9.7	9.3	6.7	2.2

주: 1) 피부양율=15-59세 인구/60세 이상 인구

자료: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인구추계 자료

구 분	1966	1980	1984
산 업 재 해 사 고 인 원 (명)	13,024	113,375	159,306
재 해	100	871	1,223
교 통 사 고 사 고 인 원 (명)	20,733	117,249	177,845
지 수	100	566	858

자료: 노동부 산재보험연보, 각년도

교통부 교통통계연감, 각년도

가하였으며, 산업재해의 발생율은 12배에 달하고 있어 사고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 노후생계보장을 위한 현행제도의 미비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일부계층에 국한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그 수혜인구는 1984년 현재 전체취업자의 5.6%에 불과하다. 또한, 1953년에 도입된 이래 현재 16인이상 사업장의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노후생계보장에 어느정도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질적 노후생계보장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① 전체퇴직자의 97.6%가 50세 이전에 퇴직금을 지급받으며, 60세이상 퇴직자의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② 현행제도는 퇴직금이 일시금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며, 퇴직금의 대부분이 자녀교육, 결혼비용, 주택구입 등에 충당되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③ 기업의 연륜이 길어짐에 따라 누적퇴직금 규모가 증대하고 있으며, 지급보장제도의 미비로 기업도산시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④ 사망, 장애발생시 배우자, 유자녀, 장애자에 대한 생계보장기능이 없다.

◇연금제도의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과 적용방법

국민연금제도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내거주 국민모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되, 기존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은 제외된다.

적용방법에 있어서는 당연적용과 임의적용으로 나누어 적용해 나가되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사업장가입자는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와 사용자 그리고 10인미만의 사업장에서 그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적용사업장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 그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됩니다. 한편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의 외 자로서 농·어민, 도시자영자 등이 그 대상이 되는데 이들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전국민연금제의 조기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기간 20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에 달하더라도 연금수급요건인 20년을 채우기 위하여 계속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65세까지 연장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는 예외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나. 급여산정방식과 구성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연금급여는 사보험제도에 있어서의 연금급여와는 달릴 소득계층간에 상당한 정도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마련된 법정의 급여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되며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연금액은 가입자개인의 소득수준, 가입기간 그리고 전체가입자의 평균보수수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다음 <표-3>의 산정식은 그 계산방법을 말하여 주고 있다. 즉, 기본연금액은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는 바, 균등부분은 사업장가입자 전원의 평균보수를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것으로 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소득

<표-3> 기본연금액 산정방법

$2.4(A+B) \times (1+0.05n)$
<p>◇2.4 : 가입기간 240개월(20년)에 대한 기준치</p> <p>◇A(균등부분) : 사업장 가입자 전원의 표준보수월액을 평균한 액</p> <p>◇B(소득비례부분)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보수(소득)월액을 평균한 액</p> <p>◇n : 가입기간 20년 초과연수</p>

재분배기능은 이 부분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입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1년마다 연금액이 가산되도록 하

여 장기가입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가금 연금액은 일종의 가족 수당적인 성격으로 연금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그 대상됩니다. 다만 자녀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2인 이내에 한정되며, 부모는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 급여의 종류 및 급여수준

급여의 종류는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

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분류되는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연령 및 소득원의 유무에 따라 4종류로 세분됩니다. 급여의 종류별로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을 보면 다음 <표-4>와 같다.

◇비용부담

국민연금은 제급여등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매월 일정비율의 각출료를 징수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제급여를 위해서는 각출료수준

<표 - 4> 급여의 종류, 수급권자,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급여의 종류		수급권자	수 급 요 건	금 여 수 준
노령 연금	기본노령 연금	본 인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할 때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할 때)	기본연금액의 100% +가급연금 (최종보수의 40%수준)
	감액노령 연금	본 인	가입기간이 15년이상 20년 미만이고 60세에 달할 때	기본금액의 72.5%~ 92.5%+가급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본 인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기본연금액의 50%~ 90%
	조기노령 연금	본 인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본인이 희망하는 때	기본연금액의 75%~ 95%+가급연금
장 해 연 금	본 인	가입기간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기본연금액의 60~100% +가급연금	
유 족 연 금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유족	다음을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가입자이던 자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자 ○2급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	기본연금액의 40%~ 60%+가급연금	
반 환 일 시 금	본인 또 는 유족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에 해당될 때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자로서 가입자격 상실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거나 60세에 달할 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한 때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사용자부담금, 본인기 여금, 퇴직금전환금에 각각 일정이자율 적용	

이 보수월액의 10%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이지만 부담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별 각출료부과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즉 사업장 가입자는 노·사균등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각출료로 출발하여 년차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현행 퇴직금준비금에서 일부를 각출료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노·사의 신규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는 임의가입형식을 택하고 있는만큼 그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금 제도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게 된다. 연차별 각출료 조정계획을 보면 <표-5>와 같다.

<표-5> 연차별 각출료 계획

(표준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대비)

구 분		'88~'92	'93~'97	'98이후
사업장 가입자	계	3.0%	6.0%	9.0%
	근로자	1.5	2.0%	3.0%
	사용자	1.5%	2.0%	3.0%
	퇴직금준비금	-	2.0%	3.0%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3.0%	6.0%	9.0%

◇국민연금기금의 설치·운영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가 소득능력이 있을 때 납입하는 각출료를 계속 적립하여 발생하는 적립금과 이익금을 기금으로 하여 급여사유발생시 급여를 하는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실시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급여사유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상당한 적립금이 쌓이게 되므로 이를 기금으로 설치·운영하게 되는데, 이러한 적립기금은 장래의 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이므로 이의 장기적인 안정유지가 필수적인바 법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그 운용수익은 최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상 되도록 명문화 함으로써 그 운용수익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금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사, 정부 및 연금수급

권자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운용계획 및 결과에 대해 심의하게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운용결과에 대하여는 일간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의 관리운영

국민연금제도가 효율적이고도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업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런데 전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기록을 장기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유지 관리하고 각출료의 징수 및 연금급여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적통제가 가능하면서도 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국민연금법은 연금업무의 집행조직으로서 국가위탁관리 형태의 법인체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므로써 관리의 효율화를 기해나갈 계획이다.

오랜동안의 참음과 진통끝에 이제 국민연금제도라고 하는 아기는 이제 막 태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탄생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역사에 있어서 커다란 한 획을 긋게 됨은 물론 인정과 의리가 넘치는 복지사회건설이라는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에 한발 성큼 다가서게 하는 일대 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모처럼 출범하는 제도에 조금의 차질도 없게 하기 위하여 관계제법령의 완비, 관리기구의 설립 및 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등 제반 준비작업에 완벽을 기하고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나서 말은바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아끼고 정성껏 돌보는 국민적 합의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 하겠다.

— 오는손님 가슴마다 —

— 4 천만의 정성심자 —